

소방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어야

1. 머리말

「법규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 무척 당황했었다. 필자는 소방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오랜 동안 건축설비기술분야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부분적이고 유치한 소방기술을 익히고 있을뿐 소방법상의 행정적,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방기술과 관련되는 현실적 체험을 통하여 느껴 왔던 문제점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제언을 피력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화재학회가 창립되면서 공교롭게도 필자가 법규 및 용어표준화연구위원회의 업무를 맡게 된 탓으로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제언해야 할 의무같은 것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법률이나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사이기 때문에 소방법을 보는 시야도 기술적 내용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안목으로 경험한 몇 가지 내용에



김 영 호
〈우원설비연구소 대표기술사〉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있으시길 바란다.

2. 몇가지 제언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예방 경계란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체계가 진압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소방시설은 화재의 진압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투자된다. 다시말하면 소방시설은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화재가 발생할 때 비로소 유효하며, 화재의 유형에 따라 시

설의 종류 및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최소의 투자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소의 투자에 의한 시설은 자칫하면 소화기능면에서 불안해지기 쉽고 완벽한 기능을 추구하다 보면 과투자되기 쉬워서 소방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결정하기 어려운 시설과 종류, 규모등을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량적 기준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된 것인지 알 길이 없으며 습관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규정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타성화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현행 법규상에 제시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않은지, 예견되는 화재의 위험성에 비하여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소방시설을 경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조사연구가 시작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소방법시행규칙과 대등한 기속력을 갖고 시행되고 있는 기술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우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무리라면 개정하기 어려운 법규성 규정이 아니라 쉽게 개정이 가능한 고시성 규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술적인 사항을 모두 고시화하게 되면 소방시설의 근간이 흔들릴 염려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골격 만은 법규성 규정으로 묶어 두고 시대적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 한가지로 소방법 제7조(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의 운용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소방법 제7조를 살펴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에 방상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의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근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방법은 이 규정을 통하여 집행관에게 화재와 관련되는 상황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정권과 대응조치에 대한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나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예시도 없이 화재와의 관련상황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법규가 본래적으로 목표하는 바의 규제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적 조치 또는 일방적 지시를 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개의 법률들이 나열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애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은 배격하고 있으며 소방법에서도 화재예방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많은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찌서 이러한 추상적인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소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각종 규정이 특수소방대상물의 다양성을 추종할 수 없기 때문에 법규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면 화재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마땅하다.

전문성을 요하는 대응조치에 대하여 경솔한 판단으로 본 조항이 인정해주는 명령권을 서슴없이 발동하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게 되거나 국민간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본 조항의 인정권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거나 본항의 지향목표를 분명히 가름하는 후속적인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3. 맺음말

첫째, 특수소방대상물에 정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의 적용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재검토.

둘째, 기술기준을 시대적상황에 알맞는 내용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고시성 규준으로의 제도적 개선.

셋째, 추상적 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소방법 제7조의 개정.

이상과 같이 소방시설과 관련되는 법규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피상적이고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적어도 모든 제도 및 법규는 시대적 발전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도나 법률이 사회발전을 뒤쫓아 오게 마련이다.

소방관계법도 예외일 수가 없으므로 법규 운용에 있어서 집행자와 피집행자간에는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게 마련이다. 어찌면 소방대상물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 권유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법의 운용에는 근본적인 분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데 법규 운용자가 구태의연한 조문에 집착하여 보수적이고 고식적인 방법에 얽매어 있다면 오히려 법규자체가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대두된다.

그러므로 제도나 법규는 사회변천에 알맞도록 개정하고 탈각하는 진통을 거듭해야 하며, 본 제안이 우리나라의 소방시설에 관한 법규 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